행정사실무법

13회까지 꾸준히 상승하던 응시자수가 감소한 해였으며,
올해는 행정사실무법에서 행정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의 제척,기피 논점으로서 다소 지엽적인 부분들이 출제되어 다수의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15회 시험부터는 특정 중요 논점들만 공부할 것이 아닌, 모든 논점들을 다루며 불의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핵심 내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닌 정규 커리큘럼을 통해 꾸준한 학습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행정심판법

주요 논점(심판 요건, 본안, 재결, 재결 후)들 중 본안 전의 논점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고지의 효력과 오고지의 효과, 행정심판 관할과 같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중요하게 보지 않은 논점에서 출제 되었습니다.

문제1-물음1의 경우 거부처분 당시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고지의 성격과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위법성 여부를 기재해주는 것이 중요 논점입니다. 다만, 해당 논점만을 기재하기에는 20점 배점의 문제에서 기술할 답안의 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평소 자주 공부해오던 '거부처분'에 관하여 별도의 목차를 잡고 기술해주는 것이 추가 득점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지에 대한 부분이 주요 논점이지만, 처분에 대한 의의를 간략히 서술하고(행.구.법.공)
거부처분에 대하여 요건을 서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고지에 대한 논점이 주된 논점이고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지의무는 처분에 대하여 의무를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은 고지의 의무가 없으므로, 본 사안은 거부처분(침익적 처분)이므로 고지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부관이라고 하는 조건부 수익적 처분이거나, 일부만 수용하는 수익적 처분의 경우는 일부는 거부하므로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개인적 공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따라서, 전체적인 답안의 흐름과 그 주된 원인을 함께 나열하기 위하여 침익적 처분인 거부처분을 언급하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지 자체만 기재할 경우 기존 20점 답안의 분량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1-물음2의 경우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속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경우에 적합한지와 불고지로 인한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성을 물었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해당 관할을 기재해주고 불고지에 관한 설명과 그 효과를 기재하여 결론을 도출하면 좋은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년 14회에서는 심판사례가 다소 난이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 전문자격사의 심판사례와 유사한 논점이 출제되어, 사례형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2. 행정사법

문제2의 휴업과 폐업은 첫 출제된 논점입니다. 다음으로 효과승계는 처분이 수반될 때에 함께 기재해주어야 할 요소입니다. 2회 시험 때 업무정지의 처분효과 승계가 논점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폐업에 대한 논점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폐업 후 그에 따른 효과승계가 수반되어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었거나 필속이 빠른 수험생의 경우 보론으로 제재 중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업무정지 처분을 추가해주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하여 모범답안에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3. 비송사건절차법

문제3의 제척과 기피는, 행정사법의 위원회 부분과 행정심판법의 위원회에도 모두 파트별로 실려있는 논점입니다. 또한, 제1회 시험에서만 예외적으로 행정심판법이 60점 출제되며, 그 중 20점에 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제척·기피에 대한 논점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해당 TOPIC은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부분으로 보이며, 고전했을 문제로 보입니다.

더하여, 회피에 대한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부분을 추가해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제척의 핵심 키워드인 '법률상',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항목들을 기재하고,
기피의 핵심 키워드인 '당사자의 신청'을 기재하였다면 기본적인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회피의 경우 '스스로'를 기억해주었다면 더욱 용이했을 것입니다.

문제4의 비송사건에서 재판의 방식
해당 논점은 제4회 2차 시험에서 출제된 논점입니다. 금년 14회에서는 재판의 방식에 대해서만 물었으나, 모범답안과 같이 4회 시험의 물음처럼 고지에 대한 부분까지 묶어 언급해주는 것이 분량확보 및 득점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재판의 방식과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재판의 방식에서 비송사건만의 특징(판결이 아닌 결정을 한다는 점, 이유기재를 생략한다는 점, 재판의 원본 및 정본과 등본에 대하여)을 열거하고, 다음 목차로 고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기본 이상의 득점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힘든 시간을 달려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1

甲은 2022. 11. 24. 아파트 불법전매 200건을 A도에 신고하였다. A도지사인 乙은 2023. 6. 12. 甲에게 A도에서 발생한 분양권 불법전매중 甲의 위 신고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이 확정된 50건에 대하여 형사재판확정증명 통지를 하였다. 甲은 2025. 6. 23. 乙에게 위 50건에 대한 신고포상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乙은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는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미 포상금 예산이 전액 소진되었다는 이유로 2025. 7. 1.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甲은 그다음 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乙은 거부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甲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甲은 2025. 11. 11. 乙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40점)

물음 1)
甲은 "乙이 행정심판법상 요구되는 행정심판 청구가능성, 그 절차 및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
甲이 제기한 취소심판이 소관 행정심판위원회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설명하시오. (20점)

<문제 1> - 물음 1)

Ⅰ. 문제의 제기

행정청이 처분을 행하는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의 청구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본 사안은 거부처분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거부처분의 성질과 고지하지 아니한 거부처분의 효력과 고지의무 위반이 거부처분 자체의 위법사항이 되는지 문제된다.

Ⅱ. 대상적격

1. 처분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거부처분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 ②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일으킬 것 ③ 신청인에게 그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Ⅲ. 고지

1. 의의

고지란 행정청의 처분 시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에 따른 절차를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2. 고지의 종류

(1) 직권에 의한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신청에 의한 고지

이해관계인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절차와 기간, 처분청 및 재결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불고지의 효과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원처분 자체의 위법성이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판례).

Ⅳ. 사안의 해결

1. 乙이 행한 행위는 거부처분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따라 고지에 의무를 부담함에도 甲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은 불고지에 해당한다.
2. 단,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원처분 자체의 위법성과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Ⅴ. 결론

乙이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 및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끝-

〈문제 1〉 - 물음 2)

Ⅰ. 문제의 제기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이 적합한지와 불고지를 한 경우 청구기간이 문제된다.

Ⅱ. 행정심판기관의 종류(관할)

1.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
3.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시·도지사 소속)
4.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5. 특별행정심판위원회(특허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회 등)

Ⅲ. 청구기간

1. 원칙

(1)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3) 90일과 180일의 기간 중 어느 하나가 먼저 경과하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가 불가하다.
(4)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되며,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나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청구기간의 불고지

(1)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행정청이 고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 경우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최초의 행정기관에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Ⅳ. 사안의 해결

1.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한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시·도지사가 속한 A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2. 乙이 처분의 상대방인 甲에게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바(불고지),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25. 7. 2.)이 아닌 처분이 있었던 날(2025. 7. 1.)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Ⅴ. 결론

甲의 취소심판에 대한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며,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끝-

문제2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휴업신고와 폐업신고(제33조에 따른 폐업 전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포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점)

Ⅰ. 휴업신고

1. 사유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하는 경우에는(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수리 통지

시장 등은 업무재개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리 간주

시장 등은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Ⅱ. 폐업 신고

1. 사유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자격증 사본과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재개신고

이는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Ⅲ. 폐업간주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Ⅳ.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1. 지위승계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행정사법인을 포함)는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처분효과승계

폐업신고 전의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된다.

3. 위반행위승계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업무정지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유 고려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Ⅴ. 보론

1. 제재

행정사 사무소(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끝-

문제3

비송사건에서 법원 직원의 제척과 기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Ⅰ. 서론

사건에 관하여는 법원 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Ⅱ. 제척

1. 의의

법관이 일정한 법정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제척의 사유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Ⅲ. 기피

1. 의의

기피는 한정되어 열거된 제척 원인 이외에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의 신청과 그에 대한 재판에 의해 당해 법관을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기피권

(1)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다만,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Ⅳ. 회피

1. 회피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해당 사건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2. 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민사소송법의 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다.
3. 다만, 민사소송법의 제척·기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이상, 제척 사유 또는 기피 사유가 있을 때 스스로 회피할 수 있는 회피제도 역시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 불복신청

1.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2. 각하결정 또는 기각결정이 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Ⅵ. 보론 - 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 범위

총칙편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비송사건 중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적용한다.

-끝-

문제4

비송사건절차법상 재판의 방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Ⅰ. 의의

비송사건의 재판이란,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의 결과를 기준으로 내리는 공권적 판단을 말한다.
이는 대립당사자 간의 변론주의에 입각한 소송사건과 같이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재판의 방식과 고지방법 등에 그 차이가 있다.

Ⅱ. 재판의 종류

1. 종국재판과 종국재판 이외의 재판

(1) 종국재판은 비송사건의 심급을 종결하기 위하여 하는 재판으로서, 본안 전 재판과 본안 재판으로 구분된다.
(2) 종국재판 이외의 재판(절차지휘재판)은 비송사건의 종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신청서 보정명령, 기일 지정의 재판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본안 전 재판과 본안 재판

(1) 본안 전 재판은 절차상의 요건 불비를 이유로 신청을 부적법 각하하는 재판이다.
(2) 본안 재판은 절차상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법원이 사건의 내용을 심리한 후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재판을 말한다.

Ⅲ. 재판의 방식

1. 결정으로써의 재판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이는 비송사건의 간이.신속한 처리의 요청에 기인한다.

2. 이유기재의 생략

(1) 원칙
비송사건은 간이.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과 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2) 예외
다만, 예외적으로 ① 항고법원의 재판, ②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③ 과태료 재판 등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재판하여야 한다.

3. 재판의 원본

(1) 원칙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 함으로써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
(2) 기명날인 대체
재판원본에 대한 판사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재판의 정본과 등본

(1) 성립형식

재판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정본에는 추가로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2) 정본

정본은 원본의 전부를 복사하여 정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을 대신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등본

등본은 원본의 전부를 복사하여 등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진다.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과는 달리, 등본은 증명을 하는 것에 그친다.

Ⅳ. 재판의 고지

1. 의의

고지라 함은 고지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객관적으로 보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현실로 그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2. 고지의 방법

(1)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단,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고지의 상대방

고지는 재판을 받은 자에게 하여야 한다. 재판을 받은 자는 재판의 결과로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끝-

- 이 하 여 백 -